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7일,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9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9.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미애의원)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이는 현행법상 외국인 가입자에게 임의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 수급자의 사망, 혼인관계 등으로 인한 수급권 변동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당연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연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급권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제한하되, 연금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외국인 중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를 정상 납부

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으로, 소득의 불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취약계층이 자신의 가입이력을 사후적으로 보충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가 외국인 가입자등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모든 외국인 가입자등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가 제한될 경우에는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에 상응하는 가입이력 보충 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으므로, 외국의 공적연금제도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성에 미칠 영향과 국제적 상호주의 원칙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안 제126조제6항제1호(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 및 제2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른 기간이 모두 10년을 초과하는 외국인 가입자등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만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추납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한 외국인 가입자 등의 적용관계를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 상호주의와 그 밖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와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상호주의와 체류자격, 국내 거주 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각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